

노란리본인권모임

2017년 활동문집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노란리본인권모임

2017년 활동 문집

차례

들어가는 글

- 03 노란리본인권모임과 함께 한 1년 김포
- 04 노란리본인권모임 2017년 활동일지
- 07 활동일지에 나온 책과 자료들

모임 후기

- 08 재난참사 피해자를 생각하다 민선
- 11 재난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어쓰
- 13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를 읽고 상열
- 16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가원
- 18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미주
- 26 국가의 ‘부작위’와 ‘무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상은
- 28 박근혜 파면결정이 멈춘 자리에서 미류

노란리본인권모임과 함께한 1년

검포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직접 보게 되었고, 세월호 추모 3주기 행사 때에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던 즈음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노란리본 인권모임'을 시작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하는)와는 다르게 책 읽고 공부하는 엄청 학술적인 모임이라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모임 초기에 다뤘던 <인권의 대전환>이라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 모임에 내가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모임에 계속 참가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던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재난참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피해자들은 어떤 문제들을 겪는지 살펴보고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에 대해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들을 읽고 토론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강연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실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부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어떤 실마리를 잡아야할지 구체화하지 못했고 국가폭력으로 재구성하는데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모임은 2주에 한번 꼴로 진행되었는데 직장 때문에 퇴근 후 가야 하는 상황이라 매번 지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던 활동가분들과 모임에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분명 작게나마 결실을 맺을 것이고 이런 결실들이 모여 진실, 안전, 추모, 치유, 지원 등 한국사회에 남아있는 큰 숙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17년 활동일지

2017년 3월 21일

자원활동가 모집.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관련활동을 현안대응에서 담론생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노란리본인권모임」 제안.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기 위해 우선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사회권에 관한 국가 의무 담론과 실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살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구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제안하는 글 中

2017년 3월 30일, 1차 모임

노란리본모임의 활동목표에 대해 토론. 인권의 시선으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밝히는 내용을 만들어 보기로 함.

2017년 4월 18일, 2차 모임

「인권의 대전환」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다룬 부분을 읽고 토론함.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충족할 의무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2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5월 16일, 3차 모임

「재난을 묻다」를 읽고 재난참사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유가족에게는 모욕이자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는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증언을 요구받는다. 사건의 정황과 경험을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들으면 안 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

- 3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5월 30일, 4차 모임

「재난을 묻다」를 읽고 재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재난참사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짚어봄.

“독일 홀로코스트 과거청산에서 ‘명령 내리는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과 ‘그것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 ‘방조-수혜자’, ‘단순 가담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집단적 책임을 묻고자 했다. 재난참사도 그런 구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때 책임 묻기도 더 나아질 거 같다”

- 4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6월 13일, 5차 모임

미류가 쓴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를 읽고 토론함.

“과연 세월호 참사를 국가 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vs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더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5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6월 27일, 6차 모임

중간점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고, 재난참사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함께 토론해왔던 내용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강연회를 추진하기로 함.

2017년 7월 11일, 1차 강연회 「해경은 구하지 않았다」

416국민조사위 박영대님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제에 대해 강연을 들음.

2017년 7월 18일, 강연회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박상은님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강연을 들음.

2017년 8월 8일, 7차 모임

진상규명 방해의 흐름을 정부책임의 은폐와 축소·유가족 고립과 여론왜곡·특조위 활동 방해로 나누어 살펴봄.

“법을 통해 만들어진 특조위인데, 단순히 특조위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하는 게 아니

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조위의 손발을 묶고 해체를 위해 심지어 특조위 활동 시작일까지 바꾸는 등으로 한 게 굉장히 이상하고 이례적이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문제의 핵심이 뭐였을까? 과연 특별법을 더 꼼꼼히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7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9월 5일, 8차 모임

해외사례로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읽고 토론함.

“이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기억되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국가 책임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인지 밝히는 것. 세월호 참사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낳은 참사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8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9월 27일, 9차 모임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살피고 토론함. 세월호 참사와 생명과 안전의 권리에 대한 소책자를 내기로 함.

“트라이앵글 화재는 세월호와 가장 유사해보인다. 사고 원인은 화재지만,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은 방화장치 미비, 출구문 폐쇄, 정보 미전달 등 ‘간접원인’으로 정리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 9차 모임 회의록 中

2017년 10월 18일, 10차 모임

미류, 민선, 상은이 제출한 소책자 준비 쪽 글을 읽고 이야기 나눔.

2017년 12월 21일, 11차 모임

어쓰, 상열이 제출한 소책자 준비 쪽 글을 읽고 소책자 기획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눔.

2018년 1월 9일, 12차 모임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2018년의 방향에 대해 토론. 2017년 함께 공부하며 나눈 고민들을 활동문집으로 정리하기로 함.

2018년 1월 30일, 13차 모임

문재인 취임 1년 앞두고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 어디쯤 왔는가> 토론회 추진하기로 함.

2018년 2월 20일, 14차 모임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서희정 연구단장과 진상규명과제에 대한 간담회 진행.

활동일지에 나오는 책과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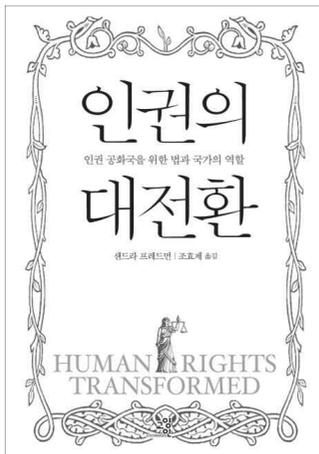
인권의 대전환 :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계 옮김, 교양인, 2009년 10월

재난을 묻다: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416세월호참사 작가 기록단 지음, 서해문집, 2017년 4월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박상은 지음, 사회운동 단행본,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미류 지음, 진보평론 제 72호(2017년 여름호), 메이데이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김성진 지음, 화우공익재단 제 4회 공익세미나 자료집, 2017년 7월



재난참사 피해자를 생각하다

민선

2009년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남일당에서 시작한 행진이 서울시청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저 멀리 청와대가 보이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어 가로막았다. 실랑이 속에 밀쳐지고 쓰러지면서 유가족들 품에 있던 영정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반년이 지나도록 상복을 벗을 수 없는 유가족들이 깨진 영정을 부여잡고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혀도 경찰은, 국가는 벽마냥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절망감이 차오르면서 수없이 되물던 말이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2009년의 여름이 고스란히 다시 내 눈 앞에 펼쳐졌다.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언제든 찾아오라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듯 청와대로 향하는 유가족들은 경복궁 광화문 아래 경찰들에 둘러싸여 밤을 지새워야 했다.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는 추모와 애도의 발걸음은 모두 가로막혔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모욕을 일삼은 국가권력에 맞서온 시간 위에서 맞는 1주기,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 같은 날 이런 전쟁을 치른다는 게, 참담했다. 국가권력이 피해자들에 휘둘렀던 폭력과 모욕의 장면들은 이렇게 반복 재현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권력을 마주했을 때만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과 모욕은 재난참사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되었다. 남영호 침몰참사,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 화재참사,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춘천봉사활동 산사태참사,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립산업 폭발참사,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7가지 재난참사 사건들을 돌아본 책 「재난을 묻다」는 재난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했던 문제를 보게 한다.

책에서 담아낸 일곱 개의 사건들은 발생 시기도, 유형도, 그 내용도 다 달랐지만, 사건의 시작부터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양상은 비슷했다. 재난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보에서 배제되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언론에 노출되며 증언을 요구받고, 일방적인 보호의 잣대에서 피해경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박탈되고, 경제적인 것부터 트라우마 등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못한 채 대상화되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면서 슬퍼할 겨를 아파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었다. (*)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암담했다. 하지만 그 암담함으로 더 분명해진 것이 있다. ‘왜 우리는 익숙한 슬픔을 반복하는가’ 이 책이 던진 질문의 답을 찾는 길은 여럿일 수 있지만, 그 길의 시작은 피해자의 권리를 세우는 것에서부터라는 것이다.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 받을 권리,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담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

(*) 모임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춘천 산사태 희생자들에게 ‘술 먹다 그런 거’ 라던 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는 ‘놀러가다 그런 거’ 라는 말로 이어지더라.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보상은 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덮는 수단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이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유가족에게는 모욕이자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는 참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된다.”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경우가 없다. 공식적인 전달도 없고,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고, 뭔가 더 알아내려고 해도 기밀이라며 가로막는다. 피해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은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생존자들의 초기 경험에도 공통점들이 있다.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증언을 요구받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언론과 트라우마>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사건의 정황과 경험을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들으면 안 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

지 않는 언론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참사의 주체인데 똑같이 참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서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던 씨랜드 화재참사 생존자, 친구들을 잃은 고통에도 대학입시 준비에 쫓길 수밖에 없던 태안 해병대캠프 생존자의 이야기가 너무도 속상했다. 같은 피해자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위주로 접근하면서 청소년은 더더욱 자신의 경험을 직접 말할 기회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조차 비슷했던 것 같다.”

“참사 이후 여러 이유로 하던 일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많다.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다 다른데, 지원을 할 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데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은데, 피해자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다.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권리’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 권력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피해자가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국가가 오히려 이를 방해하면서 유가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진상규명이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누군가를 잃은 고통과 충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유가족에게는 사건이 남긴 숙제가 평생 가는 듯하다.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어지는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세월호 참사 이후의 변화인 것 같다. 연결되면서 생기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연결로 앞으로 누군가 또 피해자가 됐을 때 막막함이 조금씩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재난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어쓰

2017년 5월 30일, 노란리본 인권모임의 네 번째 만남, <재난을 묻다>를 읽고 재난참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난참사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도의적 책임’ 등 다양한 층위와 맥락의 책임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전 여러 번의 모임과 강연 등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재난참사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말처럼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필연적/우연적 사고들을 거친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위에서 말한 다양한 층위와 맥락의 책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와 <재난을 묻다>에 소개된 재난참사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월호의 경우 선장/선원들과 현장 책임자였던 123정장만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에도 지하철을 싸구려 소재로 만드는 데 일조한 지하철공사 사장이나 대구시장 등은 무혐의, 혹은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고 여수 산단 대립산업 폭발참사의 경우에도 작업허가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사일정을 강요한 원청기업과 하청업체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다양한 맥락의 책임들 중에서 처벌은 그나마 ‘법적 책임’에 많이 내려진다. 여기에서 두 가지 고민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그나마 있는 법적 책임에 따른 처벌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쉽게 포함되지 않는 책임에 대해서는 심지어 잘 이야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재난/참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법에 의거해 혐의를 묻게 되는데, 이는 책임을 제대로 묻기에는 너무 약하다. 게다가 산안법의 경우에는 현장직원이 아닌 원청기업에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조항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나마 있는 법도 너무 구멍이 많이 나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특별법 등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두 번째 고민이 생긴다.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을 모두 법원에 위임할 수밖에 없을까?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도의적 책임 등을 모두 법원에서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법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홀로코스트 과거청산에서 홀로코스트의 ‘지휘자’, ‘지지자’, ‘방조자’, ‘수혜자’, ‘단순 가담자’ 식으로 세세하게 분류해서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건이기에 각자가 단순히 가해자인지 여부만을 판단해서는 그 과정의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세분화해서 마련하는 게 필요한 듯하다.

이를 위해 위에서 말한 ‘과정’ 으로서 재난참사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진다. 재난참사를 그 ‘순간’ 의 사건으로만 이해할 때, 그래서 그 순간의 책임만을 물을 때 재난참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보이지 않게 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대구시장이나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혹은 대림산업 폭발참사에서 무리한 일정을 요구한 원청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처럼. 재난참사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우연적/필연적 사고들, 그 모든 과정을 읽어낼 때 각 지점의 책임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국제법상 재난을 정의할 때 IFRC(국제적십자사연맹), ILC(유엔 국제법위원회) 등에서는 ‘사회 기능의 극심한 혼란’ 혹은 ‘사회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재앙’ 등의 표현을 쓴다. 재난은 전 사회적으로 극심하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참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전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재난참사의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필연적으로 재난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에 이르기 위해」를 읽고

상열

<노란리본인권모임> 다섯 번째 모임에서 미류가 쓴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를 함께 읽었다. 우리는 4월에 「인권의 대전환」을 읽으면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공부했고, 5월에는 「재난을 읽다」를 읽으면서 남영호 침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장성효사랑 요양원 화재참사 등 여러 재난참사의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앞선 책읽기의 키워드가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난’이었던 것인데, 이번 모임에선 이 두 키워드를 연결시켜 ‘재난참사와 국가의 책임’를 다뤄보게 됨 셈이었다.

재난참사와 국가의 책임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재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질문해야 할 것 같다. 재난참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의 책임을 묻는 방식도 달라지고, 재난참사를 예방·완화·수습하기 위한 활동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제인권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재난을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들의 결과로 보는 접근법을 택하자고 제안한다. 재난참사의 본체는 침몰·화재·폭발·지진·홍수·태풍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지만, 이 사건들이 어떤 사회적 제도와 문화의 결함들과 맞물리면서 파괴적인 영향을 확대해나가는지 그 사회적 과정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자연현상으로 촉발되었든 인간의 실수로 촉발되었든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법, 제도, 조직, 문화 등이 어떻게 맞물려 재난참사를 빚게 되는지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재난은 이제 천재지변이나 몇몇 사람들의 우연한 실수(인재)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게 된다. 위험에 취약한 사회적 제도와 문화의 결함들을 재 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재난참사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난참사의 위험을 생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국가와 자본일 수 밖에 없다. 자본은 이윤과 비용을 핑계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생산하는 위험의 주된 생산자이고, 국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완화를 제공하지 않” 음으로서 이를 묵인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과감하게 정의하듯 재난을 “작위와 부작위로 구성된 국가의 구조적 인권침해” 로 바라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닌 듯 싶다.

지난 몇 년간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부인되어 왔다. 우선 그날 구조를 요청한 최초신고가 있는 후 몇 시간동안 정부는 어떤 의미 있는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일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적 처벌을 받았을 뿐, 당시 구조체계의 핵심을 구성했던 박근혜, 청와대, 해경 등 국가의 주요행위자들의 행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사고당일 정부의 구조방기는 2기 특조위가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생명권 보호의무위반을 유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난참사의 상황에서 국가(또는 대통령이)가 수행해야 할 행위의무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다.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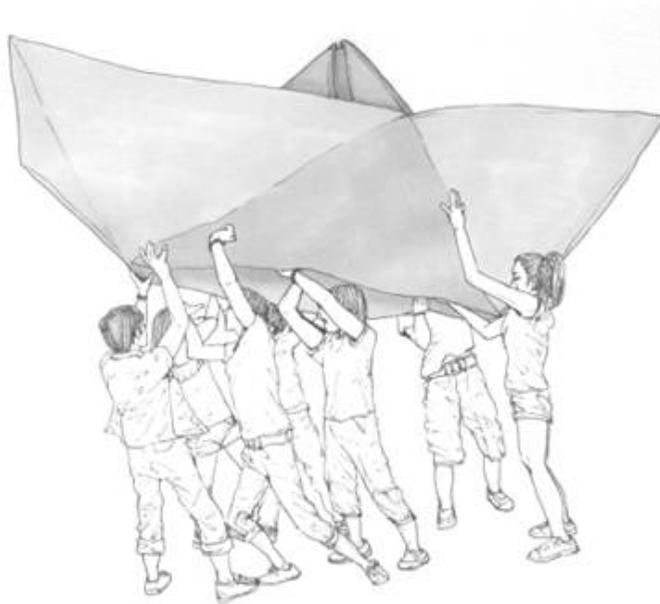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들은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그 사례로 2000년 7월 발생한 코카서스 중부 마을의 진흙산사태 사건을 언급한다.

“2000년 7월 코카서스 중부 지역의 한 마을에 진흙사태가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하고 건물도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러시아 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망의 원인이 자연재해이고 국가가 예방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이다. 인근 강의 댐들이 손상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수 년 간 방치한 탓에 진흙사태의 위험이 점차 커졌으며, 참사 2주 전에는 기상청이 재난 위험을 경보했는데도 정부가 무시했다. ‘하지 않음’ 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 기관에 의한 무력 사용으로부터 결과된 죽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사국의 관할권 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적극적 의무를 정하는 것” 이 생명권

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라고 밝혔다”

재난참사에서 생명과 안전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할 때 이 글이 소개하는 ‘인권에 대한 3중의 의무’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즉, 국가는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할 의무(duties to respect)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제 3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duties to protect)가 있으며, 또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인권의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실현할 의무(duties to fulfill)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참사와 연관시켜 본다면, 국가는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참사의 위기를 막고 그로부터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험과 위기를 알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당연한 의무다. 또한 재난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난참사의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과 아울러 기억하고 교육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진다”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가원

8차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는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크게 실체적 의무와 절차적 의무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실체적 의무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에서 국가가 조치를 취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고, 절차적 의무는 이후 사건 해결이나 규명 과정에서 국가의 행위가 중요하다. 재판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조사가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조사를 진행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역시 의무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다. 세월호의 경우, 형사적 행정적 기술적 책임을 묻는 조사들이 진행되었지만, 해경 지휘부에 대한 형사적 수사는 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 모임은 재판소의 “알았어야 했다” 는 관점에 주목했다. 재판소 판례 중 50년대부터 운영된 조선소의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한 70년대부터는 알았어야 했다는 판례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참사 관련 책임자들, 해경, 청와대는 하나같이 “몰랐다” 고 일관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는 위험감시체계인 VTS관제센터에서 몰랐다고 한 데에 이를 직무유기로 보지 않았다.

재판소의 판례 중 호흡곤란 신생아가 병원을 옮기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아기 건강상태가 심각했거나 미숙아였다는 점이 주요하게 살펴졌다가 보다, ‘병원 상호간 협력 부족, 신생아 센터 인큐베이터 고장, 응급검사 부재’ 에 의해서 신생아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한 것도 참조할 만하다. 개인의 몸 상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부터 책임의 요소를 찾아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기가 적절한 응급치료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병원 서비스 장애의 희생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 해경 교신이나 소통 및 협력이 실패한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절한 구조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정부 재난구조 장애의 희생자로 이해될 수 있다.

정신질환 있는 에이즈 감염인을 병원에서 서로 떠넘기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재판소는 “정황상 피해자가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음이 당국에 알려지거나 알려졌어야만 할 때”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며, “그럴 경우 당국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에 비춰보자면 세월호는 8시 50분 경 조난신고를 통해 최소한 배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그 시점 혹은 최소한 어느 시점부터는 구조당국에 ‘알려졌어야 한다’ . 더불어 해경이 취했어야 할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참사가 예상되는 혹은 참사로 변질 것을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위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나? 침몰의 원인부터 구조시 발생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짚어봐야 한다. 재판소 판례의 경향성에 비춰본다면 해경 지휘부의 변명, 즉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넘어갈 줄 몰랐다’ 고 하는 점은 적어도 해경 지휘부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경이 해양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감시하고, 특별점검을 제대로 하였다면, 배가 원래 그런 구조라는 걸 알았다더라면, C 데크 천막이나 D 데크 선미램프로 급격한 침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고 있어야 했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체계상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몰랐다’ 는 주장은 직무유기를 성립시키지 않았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보다, 이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기억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배상 책임 외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해경이 구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함의는 해경 123정장이 공무원으로 책임을 지게 한 것 외 국가에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배상 소송은 다른 재판들과 맞물린 부분도 있어서 진척이 더디다. 한편 국가는 정부가 이미 지출한 구조 및 후속 조치에 든 비용을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는데, 구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 소송 자체는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대형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미주

해외 대형 참사 사례들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연결시켜 보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에는 백 년 동안 기억되고 있는 트라이앵글 서트웨이스트 화재 사고, 영국 기업 살인법 제정의 배경이 된 프리엔터프라이즈호 침몰 사고 등 총 7개의 사례가 실려 있다.

닭은 듯 다른 두 개의 참사. 세월호 참사와 트라이앵글 서트웨이스트 화재 사고

트라이앵글 서트웨이스트 사고는 잘라낸 천을 담는 통에서 시작된 불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불이 단순한 화재에서 그치지 않고 146명의 목숨을 잃는 참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방화 장치 미비, 출입구 폐쇄, 부실 공사, 화재사실 미 전달 등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있던 간접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컸다. 또 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객선 운항 선령 기준 완화, 무리한 증개축,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온 화물 과적, 불안정한 직원 고용 형태 등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있던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또 한, 배 안에 갇힌 사람 중 단 1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만큼 컨트롤 타워도 부재했다.

세월호 참사와 트라이앵글 서트웨이스트 화재 사고는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참사 직후의 모습이 닮아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트라이앵글 서트웨이스트 화재 사고는 참사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하여 노동법과 산업 안전법 현대화, 무과실 책임주의 같은 산업재해 보상법과 사회보장법의 토대를 만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참사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등 다양한 모임이 조직되었고 현재 이들을 주

축으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2기 특조위 설립 촉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였으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는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활동에 난항을 겪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선 세월호 참사도 트라이앵글 서트웨이스트 화재 사고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개인이 아닌 기업에게 책임을. 일명 ‘기업 살인법’

한국에선 참사가 발생해도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 도 되지 않을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한 벌금만 내고 실무를 담당할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참사도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고작 벌금 1000만원, 대표이사가 7년 형, 다른 직원들은 집행 유예를 포함해 2~6년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고 이 후 영국에선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연간 매출액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일명 ‘기업 살인법’ 을 제정하였으며 제정 이 후 산업 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자와 기업에게 이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금전적 제재를 가해 기업 스스로가 안전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을 발의한 상태이다. 기업이 안전을 등한시해 이익을 얻는다면 강력히 처벌받아야 된다.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필요하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월호가 우연히 2014년 4월 16일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월호는 여객선 운항 선령 기준 완화, 무리한 증개축,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온 화물 과적, 불안정한 직원 고용 형태 등의 요소로 오래 전부터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우리는 해외 대형 사고들을 직접 원인과 간접원인으로 구분지어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해외에서도 명확히 해결된 사례가 극히 적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어렵기만 하다. 곧 세월호 4주기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 둔 우리는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될까?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중 해외사례 요약

정리 미주

1.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화재 - 백 년 동안 기억되다.

| | |
|------|---|
| 연제 | 1911년 3월 25일 토요일, 4시 40분 (퇴근시간 20분 전) |
| 어디서 | 8~10층에 위치한 의류 공장의 8층 |
| 사건결과 | · 불과 15분 만에 146명 사망. ·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 9·11 테러 전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
| 직접원인 | 8층의 잘라낸 천의 남은 부분을 담는 통에서 화재 시작 |
| 간접원인 | · 건물에 방화 장치 미비, 일부 출구는 노동자들의 도둑질, 휴식 방지를 이유로 위해 폐쇄 · 공장주는 화재소식을 듣자 열쇠를 들고 먼저 탈출. · 탈출구 중 비상계단은 부실하게 지어져 붕괴, 엘리베이터는 열기로 중간에 작동을 중단. · 9층에는 화재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9층에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발생 · 소방사다리와 소방호스는 건물의 6층까지만에 닿지 않음 |
| 사건 후 | <p>① 대중 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행렬에만 10만 명 이상 참여. 화재 안전에 대한 정보 교환 · 결과 : ‘공공 안전에 대한 시민위원회’ (시민안전위원회) 등장 <p>② 뉴욕 공장조사위원회의 결성과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안전위원회 주장: 의회가 화재 예방 등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결과: 의회에서 공장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 발의 · 공장조사위원회 권한: 의회로부터 증인 소환과 공장을 직접 방문 · 공장조사위원회 역할: 입법, 노동자 집회 조직, 공장 조사 등 · 공장조사위원회 활동 결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법 입법 <p>· 그 후: 고용주들은 새로운 노동법을 무력화할 수정법안 발의, 위원회는 수정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진행, 결과적으로 하나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노동법 유지, 뉴욕주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칙을 다루는 행정위원회 설치</p> <p>③ 노동조합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전: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했으나 목적 달성하지 못함. · 사건 후: 화재 이후 조직화와 입법운동을 동시에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운동: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운동을 통해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에 안전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체협약에 안전대책을 통합시키는 성과 - 조직화: 설문조사 실시.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 정리. 이를 바탕으로 시민안전위원회 결성 |
| 의의 | · 미국의 노동법과 산업안전법 현대화, · 무과실 책임주의 같은 산업재해 보상법과 사회보장법의 토대 |

2. 파밍튼 탄광 폭발 - 유가족과 노동자가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든다.

| | |
|------|---|
| 언제 | 1968년 11월 오전 5시 |
| 어디서 |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파밍튼과 매닝튼에 걸쳐있는 콘솔사의 제 9탄광 |
| 사건결과 | 99명의 작업자 중 21명 탈출. 78명 탈출 실패. 19명 시신 미 수습. |
| 직접원인 | 밝혀지지 않음. 부적절한 환기, 메탄 가스와 석탄 먼지에 대한 통제 실패 등으로 추정 |
| 간접원인 | 광산 사업주들은 기계화를 통해 2인당 석탄 산출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켰지만 기계화에 따른 석탄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음, 어용 노조. |
| 사건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밍튼 유가족 위원회 결성. 국회 증언을 통해 탄광 안전 보건법 제정 · 진폐증 연합 결성 및 비공인 파업을 벌임 · 행진을 통해 주지사가 진폐증 법에 서명을 하도록 압박 · 노조 민주화를 위한 힘있는 활동, 미수습 희생자 추모비 건립 및 현재까지 추모 행사 |
| 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광 안전 보건법 제정, 진폐증연합 결성 · 조합원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 탄광 안전 기준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 |

3. 보팔 가스 누출 사고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의

| | |
|------|---|
| 언제 | 1984년 12월 |
| 어디서 | 인도에 위치한 미국의 초국적 화학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 |
| 사건결과 | 보수적인 인도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즉시 사망자 2259명 이 후 사망자까지 합하면 총 3787명. 부상자 56만명. 이 사건 이 후 출생한 많은 신생아에게서 선형성 장애 발견됨 |
| 직접원인 | 맹독성 화학 물질 40톤이 누출 |
| 간접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인도 규제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엔 공장이 들어설 수 없으나 정부가 해외 자본 유치에 위해 규제 완화, · 회사가 위험 경보 시스템 제거하여 뒤늦게 누출 사실이 발표됨 · 회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감축 · 작업 매뉴얼은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숙지하기 어려움 · 회사는 회사의 부조리와 싸우던 노동조합을 탄압. |
| 사건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으나 회사와 정부 외면 ·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김. 후에 다른 회사에 인수됨. · 회장은 체포되었으나 추방에 그침. · 피해 배상도 재판 관할권 문제로 시간을 끌다 결국 인도 법원이 회사에게 4억7천만 달러 배상 판결. 부상자 420달러 / 사망자 1000달러 보상받음. 이마저도 못 받은 사람 많음 · 피해 주민들은 도보행진까지 했으나 미국이 신병 인도 요구 거부 · 인도 법정은 사건 발생 26년 만에 최고 경영진 7명에게 징역 2년 및 250만원의 벌금 선고했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남. 심지어 회장은 참석조차 하지 않음. |
| 의의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의 |

4. 프리엔터프라이즈호 침몰 - 영국 기업살인법 제정의 배경

| | |
|------|--|
| 언제 | 1987년 |
| 어디서 | 벨기에 지브뤼게항과 도버항 사이 |
| 사건결과 | 승객과 선원 총 193명 사망 |
| 직접원인 | 뱃머리 출입문을 닫지 않고 출항하여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복원력을 잃고 배가 기울어져 출항한지 2분 만에 침몰 |
| 간접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는 매우 경쟁이 심한 노선인 영국의 도버항과 프랑스 칼레항 사이를 취항할 목적으로 건조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빨리 실고 가속력을 높이는 데만 주력해서 설계함 ·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거론된 사람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갑판장은 문을 닫는 임무를 담당하나 선실에서 잠 - 1등 항해사는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하나 부갑판장이 오는 것을 보고 부갑판장이 자신의 임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 - 갑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갑판장은 문을 닫는 것이 본인의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음 - 선장은 감독해야 할 임무를 담당하나 선장실에선 뱃머리 출입문 개폐 여부가 보이지 않고 확인할 신호기도 없었음 |
| 사건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7명은 중과실 치사 혐의, 운항사는 기업 살인 혐의로 기소 · 결과적으로 선장과 1등 항해사 제외한 나머지 5명과 기업은 무죄 판결 · 기업 살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판례 상 고위급 임원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여야 하는데 거대 기업의 특성 상 고위급 임원이 당사자이긴 어려움. · 후에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서 10년동안 유족들이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기업살인(과실치사)법 제정 |
| 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살인법' 태동 · 최초로 개인이 아닌 기업을 살인 혐의로 기소 · 후에 법을 정비해 기업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함 |

5. 엑슨 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 징벌적 배상 제도를 둘러싼 힘겨루기

| | |
|------|---|
| 언제 | 1989년 3월 23일 밤 9시 |
| 어디서 | 알래스카 |
| 사건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억 마리의 연어, 25~50만 마리의 바다새, 2800~5000마리의 해달 등 폐사 · 어업이 중심이었던 주민들은 생계수단 잃음 · 바다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30년 이상 소요 예정 |
| 직접원인 | 엑슨 발데즈 호가 암초를 들이받아 5만 톤의 원유 유출 |
| 간접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초를 들이 받았으나 선장이 20분동안 연안경비대에 신고하지 않음 · 선장의 음주에 의한 판단력 결핍 · 초기 3일 방제 장비 부족으로 원유 회수에 차질 |
| 사건 후 | <p>① ‘유류오염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정 전: 국제 협약에 따라 선박 소유주가 모든 보상을 책임질 필요가 없음. 국제 보상 기금의 보상 역시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함, - 법 제정 후: 선박 소유주 뿐 만 아니라 임대인, 사건 당사자 등 관련 주체들 협동 책임 책임 면제 사유도 적음, 국제 기금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전적으로 피해보상 <p>② 징벌적 손해 배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엑슨사는 알래스카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방제비용 21억 달러 + 형사적 유죄 인정 및 화해에 의한 민사제재금 9억 달러 + 오염 피해자들에게 3억300달러 지불 2. 주민들은 엑슨사에게 형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진행 3. 법원은 엑슨사에게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금 2억8700만 달러 + 징벌적 손해배상 50억 달러 지불 판결. (당시, 엑슨사의 1년치 총 이익이 50억 달러) 4. 엑슨사 항소/상고로 징벌적 손해배상 25억달러로 감소 5. 법원에서 과도한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이라고 판결 징벌적 피해보상금과 보상적 피해보상금 1:1로 제정 6. 따라서 엑슨사의 징벌적 피해보상금 5억 달러로 감소 이로 인해 보상금이 변호사 선임비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하는 등 주민들 피해입음 |
| 의의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6.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 - 일본에서도 ‘조직별’ 필요성이 제기되다.

| | |
|------|---|
| 연제 | 2005년 4월 |
| 어디서 | 일본 |
| 사건결과 | 107명 사망 562명 부상 |
| 직접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속으로 인한 탈선으로 아파트에 충돌 · 기관사가 사고 직전에 범한 오버런(역에서 정차 위치를 약간 지났다가 돌아오기) 및 이로 인한 1분 20초 지연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차장의 무선 교신에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현장의 커브에서 제동이 늦음 |
| 간접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철도가 민영화되어 있음. 그 중,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JR 서일본 이라는 업체는 수익성 증진을 위해 구조 조정 및 경쟁 업체보다 열차 운행 간격과 소요 시간을 줄이고 초 단위로 관리. · 사고 당시 정차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으며 기관사들은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오버런(역에서 정차 위치를 약간 지났다가 돌아오기)이나 30초 이상 지연할 경우, 기관사는 정해진 기한없이 승무 정지, 잡초 제거,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에게 인사하기, 독방에서 하루종일 반성문쓰기 등 인격 모독적 징계를 받음. · 사고를 낸 기관사도 위와 같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한번 더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의서를 낸 상태였음. |
| 사건 후 | <p>① 기업 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R동일본 업체는 안전에 대한 관점을 책임 추궁에서 원인 규명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끈질기게 노력했고 그 결과 사고 발생 건수가 미비했음. - 사건 이 후, JR 서일본도 안전에 대한 관점을 책임 추궁에서 원인 규명으로 변경. 열차 운행 간격을 여유있게 바꾸고 정차 시간을 늘림 - 최고 속도 및 제한 속도를 낮춤 - 인력 충원 - 인격 모독적 징계 근절과 관련하여 기관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하여 승소. <p>② 유족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들 노력으로 JR서일본 전/현직 사상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 판결 과정에서 딱딱한 운행 시간표, 인격 모독적 징계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지 않음. - 유족들은 기업 활동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의 한계를 깨닫고 ‘조직별을 고민하는 공부 모임’ 발족 및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도쿄 전력에 죄를 묻고자 하는 피해자들과 연계 - 추후 법 개정 운동에 나설 예정 |
| 의의 | 일본의 형법 체계가 한국과 유사한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7. 라나플라자 붕괴 - 위험을 제 3세계로 전가하는 초국적 기업

| | |
|------|---|
| 언제 | 2013년 4월 |
| 어디서 | 방글라데시의 수도 인근의 지하1층 지상 8층 짜리 건물인 라나플라자 |
| 사건결과 | 사망자 1134명, 부상자 2515명, 실종자 300명 |
| 직접원인 | 건물 붕괴 |
| 간접원인 | <p>① 의류 공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 붕괴 전 날 이미 건물에 큰 균열이 생겨 사람들을 대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었음. 이에 따라 은행과 상점은 문을 닫았음. 그러나 의류 공장은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재검 사 결과 안전하다는 말을 하며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의류 공장 노동자들은 출근함.</p> <p>② 건축물 부실 공사</p> <p>③ 초국적 기업들의 만행 -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방글라데시 정부에 노조 설립 금지 요구 - 갑작스런 계약 관계 단절, 대금 삭감 등을 해 현지 생산 업체들은 공장의 시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으로 무리한 노동 강요 - 현지 생산업체를 선정할 때 노동 기본권 및 보건/안전에 대한 검사 배제</p> |
| 사건 후 | <p>① 초국적 기업 1. 유럽은 방글라데시 화재 건물 안전 협정에 서명 미국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동맹에 가입 2.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공장 안전에 대한 안전진단 시작 초국적 기업은 납품 공장이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압박 3. 초국적 기업은 사고 직후에만 납품 가격을 잠깐 올렸다 다시 내림. 이로 인해 생산업체들은 안전 설비를 갖추느니 폐업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기 위해 수당 삭감 초국적 기업은 굉장히 많은 양을 주문해 재하청 유도</p> <p>② 그 외 - 라나플라자 건물주는 건축법 위반 혐의,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건축법 위반 혐의 와 관련해 보석 신청 받아들여짐. 방글라데시 의류수출협회는 소셜 라나의 보석을 청 원 중 의류 공장 업주 4명 기소했으나 2명 보석 - 사망보상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꾸러졌으나 활동 미비</p> |
| 의의 | |

국가의 ‘부작위’ 와 ‘무의지’ 에 책임을 묻기 위해

상은

2017년 3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끝나고, 조사관 후속모임도 정리 후, 단체 복귀를 3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식당에 앉아 정리되지 않은 고민을 쏟아냈다. 그 말을 들은 수화기 건너편의 미류 활동가가 모임을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해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뭔가 말을 잘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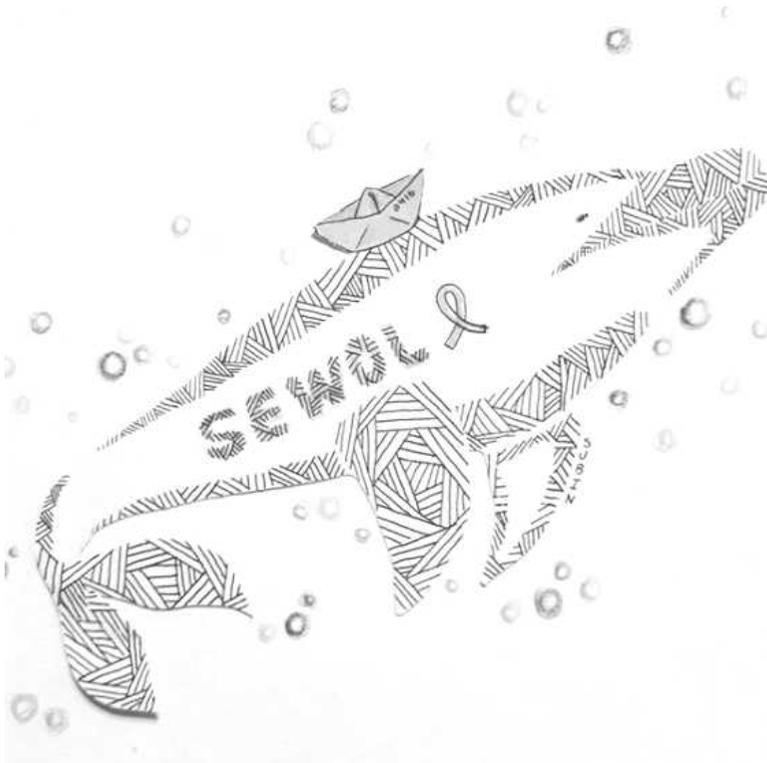
그 때 정리되지 않은 말로 쏟아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에 대한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폭력’ 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열심히 국가의 ‘의도’ 를 찾았다. 나는 이 참사의 침몰, 구조실패,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 대한 탄압을 하나로 쫄 수 있는 명확한 의도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이들은 계속 이 의도를 찾아 헤맨다. 국가의 무능력을 넘어선 ‘부작위’ 혹은 ‘무의지’ 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가? 명백한 국가폭력과는 다른, 재난참사에서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올해 2월 20일 14차 모임은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일하신 서희정 조사관 님과의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어떤 진상규명 과제가 있는지를 공유하고, 질문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서희정 조사관님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에 대해 국가실패와 국가폭력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분류에 따르면 국가실패에는 시스템 실패, 정부 자원 활용 실패, 민관관리 및 감독의 실패가 포함되고, 국가폭력에는 침몰 원인/시각 미확인, 구조하기 않

은(못한) 이유 미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란리본인권모임 성원들은 조사위원회가 ‘부작위의 작위성’, 즉 인지여부나 의도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소모적인 느낌이 든다는 의견,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만을 찾아내려는 조사가 결국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교훈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등을 제출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못구했다’와 ‘안구했다’의 사이에 있을 진실을 밝히고 이를 사회에 설명하는 것, 이 사건의 특수성을 밝히면서도 보편적인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는 왜 조사를 하고, 무엇을 향해 갈지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줬으면 한다. 노란리본인권모임도 앞으로 여러 재난참사 사례 등을 보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질문과 답을 찾아갈 것이다.



박근혜 파면결정이 멈춘 자리에서

미류

#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마침 4.16인권선언 모임이 있던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추고 생중계를 함께 봤다. 결론은 파면이었다. 기다리던 결정인데 누구도 환호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깝지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 라는 말 뒤로는 다른 얘기가 들리지도 않았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해하며 광화문광장으로 걸던 길이 선명하다. 분향소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예상하지 못했냐고. 그 동안 이루어진 혹은 멈춰버린 진상규명의 현재를 떠올린다면 예상되고도 남았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기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모르지도 않았다.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면 그만큼의 도약은 있어야 한다고 혼자 되뇌었을 뿐이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죽음이 양산된 것도, 생명이 ‘권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하는 상태로 내몰린 것도 아니었는데, 방법을 모른 채 되뇌기만 했던 것이다. 참사 이후로도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좌절당해왔다. 생명이 가치도 아니고 권리도 아닌 현실은 그렇게 지속되고 있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결정에 이르려면 생명권 보호 의무를 구성해가는 운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숙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2.

기대난망이었다고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결정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은 부정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선장과 선원들이 지는 책임과 비교할 때 국가가 지는 책임이 너무 작다는 점 때문이다.

선장과 선원, 해경123정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이 선장에게 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의한 결과” 이고 해경의 구조 작업은 그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세월호가 해경이 달려 나갈 수 없는 먼 바다나 악천후 속에서 혼자 침몰해갔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경 헬기와 123정은 퇴선 유도를 하였다면 승객 모두가 구조될 수 있었던 9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적어도 이 시간 이후로는 승객 구조에 대해 국가가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세월호 참사의 사망 및 부상 피해와의 연관성을 따진다면 더욱 그렇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이 많아진 이유는 급격한 침수와 구조방기다. 배가 기울어도 바로 침몰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로 급격하게 침수가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전복되어 가라앉은 점은 진상규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아무리 빠른 속도였더라도 충분히 구조 가능한 시간이었다는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승객들이 퇴선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배에 갇힌 점이, 사고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참사로까지 나아가게 된 핵심 원인이다.

이준석은 “승객 등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 었다고 하지만 9시 30분 이후로는 해경이 적어도 동등하게 그 권한과 지위에 있었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을 때 현장을 지휘했던 해안경비대장은 세월호 선장처럼 달아나려던 선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배로 돌아가라.” “배에 올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지 보고하라. 지금 당장!” 이와 달리 대한민국 해경은 교신도 시도하지 않고 퇴선 유도도 하지 않은 채 서성거리기만 했다. 결과적으로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책임까지 선장과 선원에게 떠넘겨진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 재판에서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선고받았고, 선원들은 ‘유기치사죄’를 선고받았다. 선장과 선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받았으나 해경123정은 업무상 과실치사 선고에 그쳤을 뿐이다. 형법 275조의 유기치사죄는 “부조를 요하는 자” 가 유기를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선원은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기치사죄라고 한다. 해경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는가? 국가야말로 세월호의 승객들을 유기하지 않았나?

선장과 선원은 수난구호법상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수난구호법은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본적으로 해경을 포함한 국가를 수행 주체로 규정하는 법이다. 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 는 해경이 구조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연락들을 모두 묵살했는데 해경은 죄가 없다고?

게다가 국가의 책임이란 현장에서 퇴선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그칠 수 없다. 참사 현장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함정은 왜 조그마한 123정 한 척뿐이었다. “일반적인 해경도 헬기와 함께 구조 작전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기는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 상황실과 지휘부가 있는 것일 텐데 현장 지휘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나.

현장대응시스템이 이대로라면, 경찰이나 해경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배반당할 수밖에 없다. 설령 뛰어난 역량과 헌신성으로 구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연에 기대야 한다면 그걸 우리의 권리라 할 수는 없다.

#3.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불러일으킨 부정의에 대한 또 다른 감각은, 국가가 지는 손톱만한 책임마저도 해경123정장이 떠안았을 뿐, 다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사건과 다를 바 없이 ‘꼬리’만 잘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여러 쟁점이 있다. 국가의 의무가 대통령의 의무인가, 대통령의 의무라 해도 탄핵 사유인가 등에 따라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4.16연대 등이 제출한 의견서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해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만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이미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 모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 공직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니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면 그만큼 생명권이 가진 규범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참사 해역으로 달려가 현장을 지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취지로 헌재 결정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난참사의 발생 사실조차 모른 채 자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에서 멈춘다면 대통령의 의무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남게 될 것이며, 대통령의 잘못은 도덕적 지탄의 대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명분만 남고 온전한 권리일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구조활동을 하게 되는 자 외에는 책임자가 없게 된다. 일선에서 가장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구조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한가? 더욱 많은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일선에서 멀리 있는데 이들의 의무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덜 지

는 것은 적절한가? 재난컨트롤타워의 상위로 갈수록,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크게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이 침몰한 사고를 국가가 구조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구조하지 않음’ 을 구성하는 행위자와 그 관계들을 따지는 것은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 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따져 물어야 할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멈춘 자리에 피고인 박근혜의 파면 결정도 멈췄다.

#4.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의무는 없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검열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전 사회적인 교육에 나서는 노력은? 이와 같은 행동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범화하기는 어렵다. 이때 ‘자명한 구속력’ 으로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살필 필요가 있다.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들은 국가의 의무를 구성할 실마리들을 던져주었다. 병원이 서로 환자를 떠넘기며 진료 거부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건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인권의 실현을 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산사태를 예측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몇 번에 걸쳐 경보를 해야 하는지 미리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갖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 지난 촛불의 광장에서 국민은 국가를 구조했다. 물으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가 직립을 기다리듯, 침몰을 갓 벗어난 국가도 인권을 지키고 증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 지난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구조했다. 우리가 권리를 지키고 누릴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숙제다.



★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모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의 시각에서 되짚어 보고, 다른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과제들 구체적으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씩 모여서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책임, 재난참사와 생명·안전의 권리 등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조금씩 퍼뜨리기 위해 무엇을 할지 궁리하고 행동하려 합니다.